**공 제 회 칙**

**2023.12.01(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브이티더블유 공제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경조와 이재의 공제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브이티더블유에 상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으로 한다.

제5조 (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은 브이티더블유 입사 시 2개월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월 별첨 1 의 기준에 의한 일정액을 급여 지급 시에 일괄 공제한다. [별첨 1] 은 전기의 결산 및 잉여금 정도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출연금)

브이티더블유는 본회에 출연금을 기부할 수 있다.

# 제 3 장 경조금 및 퇴회금

제8조 (경조금)

1. 회원에 대한 제 3 조의 경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별첨 2]과 같다. 다만, 회 원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경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금액의 1/2를 지급한다.
2. 본회의 회원은 개인별로 별도의 경조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경조사유의 신고) 경조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 첨 3]의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명백히 그 사유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경조금 청구권의 소멸) 경조금의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 한다. 단, 출산휴가 후 복직하였을 경우는 복직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제11조 (퇴회금)

회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본회를 탈퇴하는 때에는 본회의 잉여금에 대하여 그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

1. 본회에는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둔다.
2. 회장은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공제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지정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제기금의 징수 및 관리

○2 경조사유의 접수 및 공지

○3 경조금의 지급 및 지급증빙의 관리

○4 본회의 결산

제13조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본사항을 의결한다.

1. 공제회칙의 개정
2. 공제회비의 결정
3. 결산승인 및 잉여금의 처분

제14조 (감사) 대표이사는 감사로서 공제회 운영의 회칙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제 5 장 결산

제16조 (결산)

본회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년 1회 결산을 행하여 회원 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운영)

1. 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예입 관리한다.
2. 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일시 대출할 수 있다.
3. 일시대출의 한도는 월정 급여액을 한도로 하여 이율은 시중은행 금리로 한다.
4. 3항의 대출금은 대출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2 개월 내에 반제 하여야 하며 월정 급여액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한다.
5. 퇴직 등의 사유로 퇴회하는 경우 회수되지 않은 4 항의 대출원리금은 급여 또는 퇴 직금 등의 지급액에서 일시에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회비의 징수는 2002년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징수한다 제3조 (개정)

본 회칙은 2016년 11월 11일에 개정됨.

제4조 (개정) 본 회칙은 2018년 11월 1일에 개정됨.

제5조 (개정) 본 회칙은 2023년 2월 1일에 개정됨.

제6조 (개정) 본 회칙은 2023년 12월 1일에 개정됨.

## [별첨1] 회비의 징수 기준

|  |  |
| --- | --- |
| **연봉** | **금액** |
| 1억원 이상 | 48,000원 |
| 9천만원 이상 | 30,000원 |
| 7천만원 이상 | 21,000원 |
| 5천만원 이상 | 16,000원 |
| 5천만원 미만 | 12,000원 |

# [별첨2] 공제회 지급 규정

|  |  |  |  |
| --- | --- | --- | --- |
| **경조사** | **지급대상자** | **지급액** | **제출서류** |
| 결혼 | 본인 | 50 만 원 | 청첩장 |
| 자녀 | 50 만 원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 형제, 자매 | 10 만 원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칠순(만 70 세)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1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
| 팔순(만 80 세)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1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
| 구순(만 90 세)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1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
| 조 의 | 본인 | 200 만 원 | 사망진단확인서 |
| 배우자 | 10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확인서 |
| 자녀 | 5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확인서 |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5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확인서 |
| 조부모/외조부모 | 3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확인서 |
| 형제, 자매 | 3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확인서 |
| 출 산 | 본인 | 10 만 원 |  |
| 돌 | 자녀 | 1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입학  (초,중,고, 대) | 자녀 | 10 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칠순 만70세, 팔순 만80세, 구순 만90세를 기준으로 한다.

\*회원 가입 후 6개월 이내일 경우 50%만 지급한다.

\*명절(설,추석)에는 공제회 잔액이 지급 가능할 경우 회원에게 10만원이내에서 상품권(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제회는 경조금 신청서 전자결재(파일첨부 必) 완료 시 개인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